

청주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1702 판결 [건물철거,묘지굴이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1702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가단1860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0. 5. 21.

판결 선고 2020. 6. 18.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가단18609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 1) 충북 괴산군 C 지상 블록조 스텔트지붕 단층 창고 및 단독주택 21m²(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 2) 충북 괴산군 C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나)부분 24m² 묘지 1기를 굴이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원고는 2016. 1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12. 12. 이 사건 소장부분과 소송안내서 및 답변서 요약표를 직접 송달받았으나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7. 1. 9.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같은 달 17. 위 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같은 날 송달간주되었다.
- 2) 제1심 법원은 2017. 1. 18.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고, 같은 달 23. 위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7. 2. 13.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같은 달 28.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 3) 피고는 2019. 2. 2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 1)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분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6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을 직접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소송의 계속 여부조차 알 수 없었던 경우와는 달리 피고에게는 법원에 문의·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고 그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도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정본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항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 정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7. 2. 28.부터 항소기간이 경과한 2019. 2. 27.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류연중

판사이성기

판사오태환

별지